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73-01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기간 : 2022. 5. 4. ~ 2022. 9. 30.
- 참여연구원 :
 - 연구책임자 : 김혁준(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원 :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요 약 문

1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법률상 위임 근거

법(수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나. 분류정보간 연계표

□ 법률상 위임 근거

법(수정안)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정안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계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 법률상 위임 근거

법(수정안)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정안

제9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 법률상 위임 근거

법(수정안)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정안

제10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방위산업기술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5.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출원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의 소관 국가행정기관

2. 국가정보원

3. 검찰청

4. 경찰청

④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타 법령으로부터 이관되어 오는 내용

-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발명진흥법으로부터 이관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 관련 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으로부터 이관

2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전자화 대상 서류) 추가적으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를 열거
-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전자화 내용과 서면제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출원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정정신청서 양식
- (전자화업무 위탁 절차) 전자화업무 위탁 신청서 제출 → 업무규정 승인
-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양식

3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 촉진법 시행령 제3조로 이관 [삭제]
-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촉진법 시행령 제8조로 이관 [삭제]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촉진법 시행령 제9조로 이관 [삭제]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촉진법 시행령 제11~12조로 이관 [삭제]
- (한국특허정보원)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로 이관 [삭제]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로 이관 [삭제]

4 주요국의 유사 입법례

-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의 분류(35 U.S.C. 8)와 특허 및 상표 정보의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35 U.S.C. 41)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USPTO는 특허 심사 데이터(특허 출원, 특허 출원 상태 및 거래 내역 데이터 등), 특허 및 상표 등록 관련 베타 데이터, PTAB 콘텐츠의 API 데이터, 포괄적인 특허 및 상표 연구데이터 세트 등을 개방형 데이터로 제공
- (중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침(知识产权信息公共服务工作指引)’을 발표함(‘20.11.5)
 -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CNIPA 및 지방정부, 기술 및 혁신지원센터(TISC), 국가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센터,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소 등의 정보주체는 저렴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일본) 특허정보(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에 관하여 특허법과 별도의 법률로 규정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 제11조(업무범위) 각호에 따라 공업소유권 정보(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제공·활용 등을 실시
- (유럽) 유럽특허협약(EPC) 및 각국 특허법에 산업재산 정보 활용 조항 명시
 - EPC는 산업재산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관리할 수 있는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설립 근거를 명시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11
제1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령	13
1. 조문별 제정안	13
2. 전체 시행령 제정안	52
제2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63
1. 조문별 제정안	63
2. 전체 시행규칙 제정안	69
제3절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1
1. 조문별 개정안	81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6
제3장 입안 참고자료	89
제1절 주요국의 유사 입법례	91
1. 미국	91
2. 중국	93
3. 일본	94
4. 유럽	95

제2절 주요국의 관련 정책	97
1.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97
2. 미국-영국간 데이터 파트너십	99
3.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100
4.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	100
5. 영국지식재산청의 'ONE IPO' 서비스	103
6. 중국 전략성의 신흥산업과 특허분류 연계	104
제4장 결론	107

표 1-1 수정안 상의 시행령 위임 조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표 1-2 발진법 개정안 관련 촉진법으로 이관이 필요한 현행 발진법 시행령 조문	6
표 3-1 미국 특허법상 특허 및 상표의 전자적 데이터 관련 규정	92
표 3-2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	93
표 3-3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	94
표 3-4 독일 특허법상 특허 정보 관련 규정	96
표 3-5 영국 'ONE IPO'서비스 개요	103
표 3-6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IPC 연계표(예시)	105
표 4-1 시행령 주요 내용	110
표 4-2 시행규칙 주요 내용	111
표 4-3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11

그림 1-1 제정법 체계도	4
그림 1-2 본 연구의 범위	9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제1장

서론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특허·상표 등의 산업재산 정보는 전 세계 산업·기술변화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 증대

* (예시) 정부 R&D 수행 시 특허분석은 필수이고, 산업·경제·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회의·소부장회의·NSC 등에는 특허분석이 주요안건으로 논의

- 기술패권 격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국가·기업의 기술력이 **존망을 좌우**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가 지속 증대

* 특허정보는 글로벌 R&D·기술인력·산업 트렌드 등 전 세계 모든 기술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기술·산업 전략 수립 등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음**

- ◆ (기업) 특허분석을 통한 R&D 방향설정, 발명자 정보를 핵심인력 확보·보호에 활용
- ◆ (산업) 기술경쟁력 분석통한 국내 산업·기업 위기신호 감지, 중점육성산업 발굴 및 IP 분쟁 대응
- ◆ (정부) 기술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투자·육성이 필요한 전략 산업·기술 도출

- 산업재산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범국가적 활용 촉진정책 전반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측면의 고유 특성(국제표준화된 해외데이터 활용빈도多, 분석 등 가공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R&D·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등)은 '공공데이터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

- 현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발의(강훈식 의원, '21. 11. 2.)되어 입법 절차 진행 중

* 또한,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 발의

-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단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필요성

- 현행 법률 제정안은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필요 가치와 그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 신설 및 기존법률 내 관련조항 이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규정

| 그림 1-1 | 제정법 체계도

조문 체계	주요 내용	비고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신설
	▷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제2장 정책의 수립 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신설
	▷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신설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 산업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촉진 및 타분류 연계	신설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 ▷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관
	▷ 국가 안전보장 목적의 정보 제공 - 국가핵심기술 미공개 특허정보의 관계부처 제공	신설
	▷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 산업재산 정보 동향조사, IP-R&D 분석 등	신설
	▷ 산업재산 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관
	▷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이관
	▷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산업재산 정보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신설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협력 ▷ 보안 및 품질관리 ▷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신설
	▷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이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이관
	▷ 업무의 위탁, 비밀유지, 청문, 공무원 의제	이관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 벌칙, 과태료	이관

○ 국회 검토보고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문 21개**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8개 등 29개 사항의 구체화가 필요

| 표 1-1 | 수정안 상의 시행령 위임 조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번	조문	내용
1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④ (전단 생략)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5	제7조(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6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7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8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9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	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1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2	제14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13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4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5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6	제16조(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6. 그 밖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17	제17조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8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연번	조문	내용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	제21조(국제협력)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3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5. 그 밖에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4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25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6	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8.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27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8	제26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9	제31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촉진법과 함께 발의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발의, '21. 11. 2.)과 관련하여 촉진법으로 이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 검토 필요**

| 표 1-2 | 발진법 개정안 관련 촉진법으로 이관이 필요한 현행 발진법 시행령 조문

연번	조문	내용
1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연번	조문	내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3	제8조의3(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삭제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를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와 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업무 수행 실적 판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8조의4(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정보화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연번	조문	내용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19조의2(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8	제28조의8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9	제29조(업무의 위탁)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이하 ‘촉진법’)의 시행 전 하위법령안(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법(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에 필요한 입법 참고자료 및 유사 입법례 조사·분석

| 그림 1-2 | 본 연구의 범위

1	하위 법령안 마련: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 촉진법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14개 사항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 마련 • 촉진법안 및 시행령에서 특허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Direct
2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발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존 발진법에서 촉진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반영된 발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Indirect
3	입법 참고자료 마련: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발진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 작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별 제정 이유 작성 • 국내외 입법례 등 조사 분석	Reference

2 연구의 방법

- 법령안 마련 과정과 참고자료 마련으로 나누어서 연구 추진
 - (하위 및 관련 법령안 마련) (STEP 1) 연구팀의 법령안 작성 → (STEP 2)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보완의 과정을 거쳐 법령안의 고도화
 - * 법령 조문검토 및 법령 체계 검토로 구성
 - (참고자료 마련) 입법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 * 조문별 제정이유, 유사 입법례 등을 조사·분석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조문을 구체화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작성한 후 기존 특허청 훈령 및 고시와의 정합성,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행령 수정 및 시행규칙안 마련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제2장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하위법령안

제1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령

1 조문별 제정안

목적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취지

- 이 영의 입법 목적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함

□ 해설

- 거의 모든 시행령의 목적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 본 시행령도 그에 따름

□ 참고 조문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안 제2조)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취지

- 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보 의무 및 특허청장 직권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명시

□ 해설

〈위임근거〉

- 법(수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통상의 기본계획과 달리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여 특허청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점이 특징
 - 따라서, 타 기본계획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기본계획 작성지침 배포 ② 관계 중앙행정 기관마다 소관 업무 관련 계획·시책 작성 및 제출 ③ 기본계획 총괄 중앙행정기관이 기본 계획 수립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기본계획 통보의 절차로 수행되지만
 - 본 기본계획은 특허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만하여 수립(법 제5조제1항) 하 도록 하고 있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계획·시책을 제출받는 세부 절차가 불필요

- 게다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통해 가능
- 본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일정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은 시행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명시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게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조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13조는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변경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본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의 협의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참고 조문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p>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표(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p>

	<p>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수소법 시행령 제4조</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2조</p>	<p>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취지

-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시행계획은 타 법률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통상의 시행계획이 아니라 특 허청 단독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의미
 - 따라서, 타 법률 시행령에서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시행령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만을 규정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관계 국가행정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를 명시
 - * 관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기관

□ 참고 조문례

<p>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6조</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3</p>	<p>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0조</p>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안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개발·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취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구체화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7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과 공공의 산업재산 정보 수요, 관리, 활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확보
- 실태조사 수행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 참고 조문례

<p>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3</p>	<p>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p>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안 제5조)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계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취지

- 연계표 작성 절차, 방법, 작성 주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는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산업 통계와 연계분석이 쉽지 않음
- 산업재산 정보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과기부), 산업기술분류(산업부), 산업품목분류(관세청) 등과 연계표를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성 제고 필요
- 따라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산업기술의 변화·발전에 따라 각 분류체계도 변경되기 때문에 일정 주기(5년)로 업데이트 하도록 규정

□ 참고 조문례

<p>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p>	<p>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p> <p>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p>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p>	<p>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안 제6조 ~ 제7조)

- 제6조(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 그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의 내용보정에 한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취지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규정하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본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대상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본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

□ 해설

〈위임근거〉

- 법(수정안)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정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대상 서류를 포괄주의 방식

(negative system)으로 제8조제1항에서 구체화

* 법 부칙 제5조 제1항~제3항에서 디자인보호법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상표법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특허법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삭제

- 이 때,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전자화 대상 서류)의 내용을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규정

- 시행령상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에만 명시된 내용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와 “2.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을 남겨두었고 나머지 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는 시행규칙에 위임

○ 영 제6조제2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행 기술 검색 편의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 명세서 등도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전자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 상에 규정함

○ 영 제6조제3항은 특허청장 및 특허심판원장이 산업재산문서를 전자화한 경우 “출원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특허청장 “출원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출원인”과 “출원인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전자화 통지는 출원인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출원인등”으로 통지 상대방을 일원화

○ 영 제6조제4항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 제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전자화를 통지받은 출원인등이 정정신청서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정정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참고 조문례

[전자화 대상 서류]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p>	<p>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① 법 제217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8. 삭제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11. 삭제 12. 발급신청서(서류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증명신청서(특허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결문등본송달
------------------------------------	--

	<p>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으로 한정한다)</p> <p>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4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p>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p>제98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발급신청서(서류의 등본·초본 발급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인 경우만 해당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	<p>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17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및 상표원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판청구 사실증명 나. 심결확정 사실증명 다.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라.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전자화 내용 통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	<p>제120조의7(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	<p>제99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	<p>제98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7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① 법 제12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시설 요건
 -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
 -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것
2. 인력 요건
 -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
 - 1)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취지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특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명시

□ 해설

- 영 제7조제1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6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상표법 시행규칙 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규정
- 영 제7조제2항은 전자화업무를 복수 위탁 근거이고, 전자화업무를 위탁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

□ 참고 조문례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p>	<p>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변리사가 없을 것 <p>②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	---

	<p>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p> <p>③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6조</p>	<p>제96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p> <p>1. 시설</p> <p>가.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p> <p>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것</p> <p>2. 인력</p> <p>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p> <p>나.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가 없을 것</p> <p>②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1. 사업계획서(작업 절차를 포함한다)</p> <p>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p> <p>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p> <p>③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자에게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상표법 시행규칙 제96조</p>	<p>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p>1. 시설 요건</p> <p>가.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p> <p>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것</p> <p>2. 인력 요건</p> <p>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p> <p>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p> <p>1)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p> <p>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p> <p>②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작업 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서</p> <p>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서</p> <p>4.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둘 이상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안 제8조)

제8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이하 “산업재산 통계·지표”라 한다)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무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의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취지

-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법(수정안)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그 밖에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수정안) 제13조에서는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 및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특허청장의 시책수립, 자료 제출 및 협조요청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3조제5항에서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법 제13조는 기존 발명진흥법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이 이관된 것으로 기존 발명진흥법 제20조의8의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통계·지표”라 한다)”로 변경
 - 기존 발명진흥법 제20조의8 관련 시행령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6을 함께 이관하여 규정

- (조사·분석 대상)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통계·지표를 조사분석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또는 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과 비교하여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추가
- (조사·분석 방법)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방법으로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 (제출 요청 자료)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영 제8조제3항에서 이러한 경우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산업재산의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규정함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p>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p>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안 제9조)

제9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특허청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취지

-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업재산 정보 제공방법·산업재산정보 제공시 수수료 산정 기준 등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특허청 훈령 제1079호)”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청 공공데이터에 해

당하는 산업재산 정보에도 적용됨

- 법 제14조 제1항에 전단에서는 「특허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유 이외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이에 영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발명자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i)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ii)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iii)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
- 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
 - 현재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조하여 규정
 -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가 산업재산정보활용법 제14조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의 해당내용도 본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음을 규정
- 영 제9조 제5항에서는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이 고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재산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법」의 규정 적용 가능

- 다만, 추후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고시를 두게 될 경우, 목적 규정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특허청훈령 제1079호) 제1조(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00호) 제1조(목적) 등 참조

〈공공데이터법과의 관계〉

- ◇ 산업재산 정보는 공공데이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
 - ※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이며(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상 “산업재산 정보”는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의미”(수정안 제2조 제2호)
- ◇ 산업재산 정보 중 전자화된 것은 모두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고, 현재 산업재산 정보는 기본적으로 **전자파일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고,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산업재산 정보는 공공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재산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보다 전문화된 법 규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의 유관 조항에 구체화하여 그 목적 실현
- ◇ 산업재산 정보는 대부분 특별한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산업재산 정보의 경우에는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동법 제정안 제4조)*
 - *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데이터법」은 산업재산 정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공공데이터법」이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음
 - 산업재산 정보 중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공공데이터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이 적용
 - 산업재산 정보는 대부분 특별한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상 입법 미진이 있더라도 「공공데이터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면 해당조항 적용 가능
 - * 산업재산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이므로, 법률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공데이터법의 일반 규정 적용 가능

□ 참고 조문례

<p>발명진흥법 시행령</p>	<p>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p>
-----------------------------	--

<p>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p>	<p>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특허청은 공공데이터를 정보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외부에서 교환, 구매, 납품된 자료로서 계약시 제공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추가적인 데이터의 생성,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 그 생산에 별도의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3. 기타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및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2조(비용부담)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3. 정보 교환·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 4. 특허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 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p>	

<p>공공데이터법</p>	<p>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전자정부법</p>	<p>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해상교통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그 관리·기공·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p>	<p>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청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p>	<p>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8조(데이터 등록·제공)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에 따른 식약데이터포털 2. 「공공데이터법」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제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행안부 소관) <p>② 데이터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등록·제공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제8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및 부분제공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담당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9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공데이터법」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데이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법」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 3.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p>② 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p> <p>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법」제31조부터 제34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p>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안 제10조)

- 제10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방위산업기술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5.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
-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출원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의 소관 국가행정기관
 2. 국가정보원
 3. 검찰청
 4. 경찰청
- ④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지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 정보가 공개되기 전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제공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

□ 해설

- 법 제15조에서는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공내용) 미공개 산업재산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내 출원에 한정하고, 각종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방위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등의 지정, 선정 등을 위한 정보로 한정
- (분류기준)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언급된 기술분야에 속하는 출원인지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제공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제공대상이 당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변경되어 더 폭넓게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대상도 관계 국가행정기관으로 넓어짐
 - 제3항에서 제공대상인 관계 국가행정기관을 소관 국가행정기관 이외에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 (절차) 미공개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 보안체계 구축 및 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1-26호) 제6조 참조

□ 참고 조문례

<p>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기술보호법)</p>	<p>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대외무역법</p>	<p>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p>

	<p>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p>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p> <p>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p>
<p>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p>	<p>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p> <p>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p> <p>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외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 대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조사)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p>
<p>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p>	<p>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p>

<p>(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 법)</p>	<p>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특허법 시행령</p>	<p>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p>
<p>국가정보원법</p>	<p>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화·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21-26호)</p>	<p>제6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① 전담기관은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정보고객정책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p> <p>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등 (안 제11조)

- 제11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지정된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산업재산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 ④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취지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요건(시설 및 인력), 지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해설

- 법 제17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 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항에서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위임근거〉

- 법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 신청)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각 분야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지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영 제11조 제1항)

- (진단기관의 업무) 진단기관은 특허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 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영 제11조 제2항)
- (진단기관의 지정고시)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특허청장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영 제11조 제4항)
- (산업재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재 특허청고시 제2021-23호(2021. 12. 6. 일부개정, 2021. 12. 6. 시행)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있는 바, 추후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산업재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고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p>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고시 제2021-23호, 2021. 12. 6. 일부개정, 2021. 12. 6. 시행)	<p>제1조 목적 / 제2조 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제3조 진단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등 / 제4조 심의위원회 / 제5조 지정 / 제6조 지정서 교부 등 / 제7조 관리감독 등 / 제8조 실적보고 /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 재검토키한</p>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안 제12조)

제12조(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취지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 규정

□ 해설

- 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위임근거〉

법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p>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	--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안 제13조)

- 제13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산업재산 정보값 오류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생성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취지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수정안) 제22조 제3항에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대상) 품질관리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산 정보는 법 제9조제1항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관리되는 산업재산 정보를 대상으로 함
 - (기준) 품질관리의 기준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관리체계, 표준화 준수, 정보값 오류를 제시
 - (절차)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장이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참고 조문례

<p>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양관측 성과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해양예측정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수로측량 성과 4. 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 <p>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취득·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각 단계별 품질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p>	<p>법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p>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p>
<p>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p>	<p>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p>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지표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환경부훈령 제1441호)</p>	<p>제4조(기본원칙) 데이터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것 2.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할 것 3. 연계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할 것 4. 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것 <p>제9조(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이터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표준의 적용 계획 6. 그 밖의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조달청훈령 제2016호]</p>	<p>제19조(데이터품질 점검 및 개선) ①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에서 생산된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품질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이터표준 2. 데이터구조 3. 데이터값 4. 데이터성능 5. 데이터보안 <p>②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품질 점검 시 발생한 오류를 개선하여야 한다.</p> <p>③ 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품질 점검 및 개선의 실적을 측정 및 평가 할 수 있다.</p>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안 제14조)

제1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취지

- 한국특허정보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지원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지원
 7.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법(수정안) 제24조 제4항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이러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개정중)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익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개정중)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

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함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중)	<p>제8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2.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3.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보급 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안 제15조)

제1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산업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산업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취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법(수정안) 제25조 제4항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이러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8(개정중)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익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8(개정중) 상의 '지식재산' 용어를 '산업재산'으로 수정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8(개정중)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함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중)	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법 제11조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6.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7. 법 제17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
10.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한국특허정보원
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취지

- 이 법에 규정된 일부 업무의 일부를 특허전략개발원과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함

-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 법 제11조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 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 법 제17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 법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
-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을 규정
 - ‘지정’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민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진입규제임
 -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는 각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자격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함
- 위탁 업무 및 기관의 공개
 -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p>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p>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2.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p>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출력 및 검색·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	<p>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의 시행 4.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5.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6. 법 제2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기상법 시행령</p>	<p>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7조)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취지

- 과태료 부과대상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등 위반횟수별로 구체적인 과태료를 산정하여 규정함

□ 해설

〈위임근거〉

법(수정안)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의 형사벌을 부과하고, 기관 명칭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로 다루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기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기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삭제 <2015.11.18.>				
	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100	250	500
	마.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100	250	500
	바. 법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	100	250	500
	사. 법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100	250	500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규제의 재검토(안 제18조)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0월 0일
2.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23년 0월 0일

□ 취지

- 2013년 8월 16일 신설된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의 취지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인 경우 개별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규제의 재검토 규정 명시

□ 해설

- 현행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이 삭제되고, 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영(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영(안) 제18조에 규정

□ 참고 조문례

발명진흥법	<p>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발명진흥법 시행령	<p>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4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취지

- 본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본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적시

□ 해설

- 본 시행령의 시행일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해진 공포일로 정함
*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2 전체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개발·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계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 그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의 내용보정에 한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① 법 제12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시설 요건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 인력 요건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

1)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이하 “산업재산 통계·지표”라 한다)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무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의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9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

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방위산업기술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5.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출원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의 소관 국가행정기관
2. 국가정보원
3. 검찰청
4. 경찰청

④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지정된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산업재산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④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산업재산 정보값 오류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생성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산업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산업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2.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법 제11조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6.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7. 법 제17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
 10.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한국특허정보원
 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0월 0일
2.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23년 0월 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산업재산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	250	500
나.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	250	500
다.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	250	500

제2절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1 조문별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취지 및 해설

-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을 다수의 입법례에서 확인하여 규정

□ 참고조문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 가. 취소신청 사실증명
 - 나. 심판청구 사실증명
 - 다. 특허취소결정확정 사실증명
 - 라. 심결확정 사실증명
 - 마.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 바.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 취지 및 해설

- 전자화 대상 제외 서류 중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를 명시

□ 참고 조문례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p>	<p>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① 법 제217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8. 삭제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11. 삭제 12. 발급신청서(서류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증명신청서(특허취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으로 한정한다) <p>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위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4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p>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p>	<p>제98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발급신청서(서류의 등본·초본 발급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인 경우만 해당한다)
<p>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p>	<p>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17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및 상표원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판청구 사실증명 나. 심결확정 사실증명 다.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라.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제3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영 제6조제4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말한다.

□ 취지 및 해설

- 전자화를 통지받은 출원인등이 정정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정함
- 기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관

□ 참고 조문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	<p>제120조의7(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p>제99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	<p>제98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위탁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직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②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취지 및 해설

- 전자화 위탁업무 수행절차를 신청서 제출 → 업무규정 승인의 과정으로 명시

□ 참고 조문례

- 신청서 제출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2항</p>	<p>②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p>	<p>②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작업 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상표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 및 제3항</p>	<p>②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 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서 4.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 업무규정 승인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p>	<p>제120조의4(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7조</p>	<p>제97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필요한 사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9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처리절차 2.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 3.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의 비밀 유지 4.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 취지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양식 규정

□ 해설

- 영 제11조제1항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서식 양식을 시행규칙에 위임, 영 제11조제4항에서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별지서식 양식을 시행규칙에 위임
- 해당 별지서식은 현행 특허청 고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산권진단기관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 제2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 취지

- 본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본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명시

□ 해설

- 시행일은 공포일로 정함
- 본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어 오는 특허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삭제를 명시

구분	조문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제120조의4(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제120조의7(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삭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6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제97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98조(전자화 대상 서류) 제99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삭제
상표법 시행규칙	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제98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제99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삭제

2 전체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 가. 취소신청 사실증명
 - 나. 심판청구 사실증명
 - 다. 특허취소결정확정 사실증명
 - 라. 심결확정 사실증명
 - 마.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 바.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제3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영 제6조제4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위탁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②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접수번호】

【정정대상항목】

【정정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 기재요령 제6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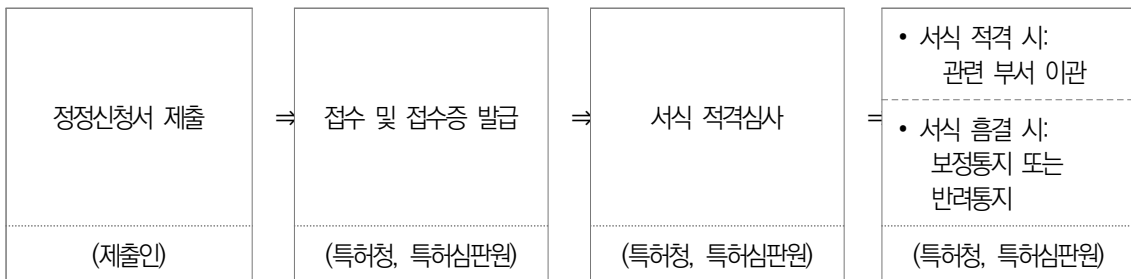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특허법」 제217조의2제4항, 「상표법」 제217조제4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화된 내용을 통지받은 출원인등이 그 전자화된 내용과 당초 제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전자화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

※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국제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4)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5)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국제출원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및 【대리인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3.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란

제출인이 밝히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청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	【취소신청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17-소-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인 경우에는 이 서식의 우측 상단에 "PCT"라고 적습니다.

4. 【정정할 사항】란

가. 【정정할 서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정정하려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일자를 적습니다.

[예]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보정서(2007. 1. 1. 제출), 의견서(2007. 1. 1. 제출) 등

나. 【접수번호】란에는 정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다. 【정정할 서류】가 다음 예 1과 같이 2 이상의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정정할 서류】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1] 정정할 서류의 내용

정정할 서류	정정대상항목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출원서	발명의 국문명칭	일산화 탄소	이산화 탄소	
명세서	청구항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	

[예 2] 기재방법

【정정할 사항】

【정정할 서류】 출원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로 정정합니다.

라. 【정정대상항목】란

정정하려는 항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보정내용 등

마. 【정정대상 항목】 과 【정정내용】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고 각각의 정

정내용 사이에는 1행의 공백행을 삽입하여 구분합니다.

[예]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국문명칭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

【정정대상항목】 발명자

【정정내용】 "홍동길"을 "홍길동"으로 정정합니다.

바. 【정정내용】

정정하는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정정내용】 "일산화 탄소"를 "이산화 탄소"로 정정합니다.

[예 2] 【정정내용】 "도2-슬릿·반응성 혼물"을 "도2-슬릿·반응성 혼합물"로 정정합니다.

[예 3] 【정정내용】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비닐인 화합물"을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페닐인 화합물"으로 정정합니다.

[예 4] 【정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로 정정합니다.

사. 명세서, 도면, 청구항 등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정정내용】의 다음 행에 "아래(별첨)"란을 만들어 정정할 내용을 적습니다.

[예] 【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발명의 내용

【정정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중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별첨)

【해결하려는 과제】

폴리우레탄 발포제를 생성할 때에는, 1종 이상의 반응성 성분(폴리이소아이트 및 이소아네이트-반응성 수소 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 특히 폴리올)을 액상 또는 기상 팽창체와 혼합한 다음, 다른 성분과 혼합하고, 얻어진 혼합물을 몰드에 배치식으로 또는 콘베이어벨트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기서 혼합물을 팽창시키고 경화시킨다.

1. 액체 2성분 반응성 혼합물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2. 기포 핵을 유도하는 경우, …대응하여야 합니다.

[예]【정정할 서류】 명세서

【정정대상항목】 청구항

【정정내용】 "청구항 2와 청구항 3"의 밑줄친 부분이 누락되어 아래(별첨과 같이)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별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의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반응성 혼합물은 …특징으로 하는 방법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2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호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만 해당됩니다.

-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 (2) 2007년 6월 30일 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의 서식 중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해당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진단 기술분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업재산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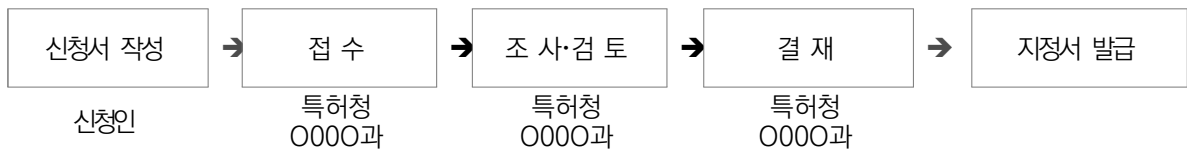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처 리 절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진단기술분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허청장



제3절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 조문별 개정안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p>〈 삭 제 〉</p>

□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과 정보화시행계획이 정보활용촉진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상에 구체화되어 있던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일정과 내용을 삭제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 삭 제 〉</p>

□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활용촉진법에서 “산업재산 정보”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이관됨
 -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
 - (산업재산 정보)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 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

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 삭 제 ></p>

□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 개정('22.8.4 시행)으로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으로 변경
- 정보활용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의 근거 법률이 발명진흥법에서 정보활용촉진법으로 이관될 예정(정보활용촉진법 제24조)이므로 발명진흥법 시행령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의 내용도 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으로 이관

라.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p>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 삭 제 〉

□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은 정보활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으로 이관되어 해당 시행령 조문의 삭제 필요
- 해당 시행령 조문은 산업재산 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기술

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삭 제 〉

□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및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활용촉진법 제1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으로 이관
- 따라서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및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또한 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및 제14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로 이관

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삭 제 〉

□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보활용촉진법 제25조로 설립근거가 이관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이 산업재산 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로 이관

사. 업무의 위탁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업무의 위탁)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p>	<p>< 삭 제 ></p>

□ 개정 이유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가 정보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6조로 이관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상 해당 조문 삭제

아. 별표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p>< 삭 제 ></p>
<p>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개별기준 <p>다. 법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p> <p>사. 법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p>	<p>< 삭 제 ></p>

□ 개정 이유

- 산업재산권진단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관련 내용의 이관에 따른 별표 내용 삭제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p>< 삭 제 ></p>
<p>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야 한다.</p>	<p>< 삭 제 ></p>
<p>제8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 삭 제 ></p>
<p>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p>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 삭 제 ></p>
<p>제19조(산업재산권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p>	<p>< 삭 제 ></p>

현 행	개 정 안
<p>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 삭 제 〉
<p>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p>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 삭 제 〉
<p>제29조(업무의 위탁) ③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p>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p>	〈 삭 제 〉
<p>별표 8.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p>	〈 삭 제 〉
<p>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p> <p>2. 개별기준</p> <p>다. 법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p> <p>사. 법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p>	〈 삭 제 〉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제3장

입안 참고자료

입안 참고자료

제1절 주요국의 유사 입법례

1 미국

□ 미국에서는 특허법에서 특허의 분류(35 U.S.C. 8)와 특허 및 상표 정보의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35 U.S.C. 41)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허의 분류) 미국 특허법 제8조에서는 특허청장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실용적이라면 미국 특허증 및 기타 특허와 간행물의 주제에 따른 분류를 개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¹⁾

-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신규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 산업재산정보활용법 제정안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산업연계 분류 등과는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특허 및 상표 검색시스템) 미국 특허법 제41조 (i)에서는 “전자적 특허 및 상표 데이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허청장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특허 등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물을 유지·관리하고, 자동화된 검색시스템을 통해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수수료 및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

1) 35 U.S.C. 8 CLASSIFICATION OF PATENTS.

The Director may revise and maintain the classification by subject matter of United States letters patent, and such other patents and printed publications as may be necessary or practicabl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ith readiness and accuracy the novelty of inventions for which applications for patent are filed.

2) 35 U.S.C. 41 PATENT FEES; PATENT AND TRADEMARK SEARCH SYSTEMS.

(i) ELECTRONIC PATENT AND TRADEMARK DATA.—

(1) MAINTENANCE OF COLLECTIONS.— The Director shall maintain, for use by the public, paper, microform or electronic collections of United States patents, foreign patent documents, and United States trademark registrations arranged to permit search for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The Director may not impose fees directly for the use of such collections, or for the use of the public patent and trademark search rooms or libraries.

(2) AVAILABILITY OF AUTOMATED SEARCH SYSTEMS.— The Director shall provide for the full deployment of the automated search systems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 that such systems are available for use by the public, and shall assure full access by the public to, and dissemination of, patent and trademark information, using a variety of automated methods, including electronic bulletin boards and remote access by users to mass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 표 3-1 | 미국 특허법상 특허 및 상표의 전자적 데이터 관련 규정

35 U.S.C. 41 특허 수수료; 특허 및 상표 검색 시스템(PATENT FEES; PATENT AND TRADEMARK SEARCH SYSTEMS)	
(i) 전자적 특허 및 상표 데이터(ELECTRONIC PATENT AND TRADEMARK DATA)	
(1) 수집물의 유지 관리(MAINTENANCE OF COLLECTIONS)	특허청장은 정보 검색 및 검색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미국 특허, 외국 특허 문서 및 미국 상표 등록의 종이, 마이크로폼 또는 전자적 수집물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그러한 수집물의 사용 또는 공개된 특허 및 상표 검색 공간 또는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자동화된 검색시스템의 가용성(AVAILABILITY OF AUTOMATED SEARCH SYSTEMS)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을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여야 하며, 전자게시판과 대용량 저장 및 검색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원격 접속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동화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 및 상표 정보를 배포하고 일반 공중에게 완전한 접근을 보장 하여야 한다.
(3) 접속 수수료(Access Fees)	특허청장은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 할 수 있다. 그러한 수수료가 정해지면 교육 및 훈련 목적으로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제한된 양의 무료 접근이 제공 된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거나 수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본 항에 의해 승인된 개인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자동 검색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일반 공중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각 보고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 (특허 데이터 개방) USPTO에서도 특허 심사 데이터(USPTO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상태 및 거래 내역 데이터 등), 특허 및 상표 등록 관련 베타 데이터, PTAB 콘텐츠의 API 데이터, 포괄적인 특허 및 상표 연구데이터 세트 등을 개방형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음³⁾

(3) ACCESS FEES.— The Director may establish reasonable fees for access by the public to the automated search systems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f such fees are established, a limited amount of free access shall be made available to users of the systems for purpose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 Director may waive the payment by an individual of fees authorized by this subsection upon a showing of need or hardship, and if such waiver is in the public interest.

(4) ANNUAL REPORT TO CONGRESS.— The Director shall submit to the Congress an annual report on the automated search systems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the access by the public to such systems. The Director shall also publish such report in the Federal Register. The Director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submission of comments by interested persons on each such report.

3) USPTO > Home Learning and Resources > Open data and mobility,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n-data-and-mobility> (2022.9.23. 최종접속).

2 중국

□ 2020년 1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침(知识产权信息公共服务工作指引)’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建设知识产权信息公共服务体系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동 의견에서는 ‘상호연결과 개방, 공유’를 중심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국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목표)** 각 채널의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편리하고, 표준화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함
- **(정보 제공 주체)** CNIPA 및 지방정부, 기술 및 혁신지원센터(TISC), 국가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센터,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소 등 지식재산 정보에 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을 포함함
- **(서비스 내용)**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 정보주체는 저렴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표 3-2 |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정보 교육활동을 통해 검색 능력을 강화 - 각 채널 간 협업을 통한 정보 공유 - 각종 소통창구를 통한 지식재산 문헌정보, 정보분석 활용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
전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검색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특정 기술 분야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제공 - 정부부처, 기관, 산업체 등에게 특허 내비게이션,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정보의 응용도구 개발 등

3 일본

□ 특허정보(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에 관하여 특허법과 별도의 법률로 규정

- (법적근거)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 제11조(업무범위) 각호에 따라 공업소유권 정보(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제공·활용 등을 실시

| 표 3-3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

제11조 업무범위

정보·연수관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공보, 견본 및 모형을 수집, 보관 및 진열하고, 이들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하게 하는 것
2. 심사 및 심판에 관한 도서 및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문헌을 수집, 보관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
3. 공업 소유권의 유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실시하는 것
4. 전3호에 열거하는 사항 외에 공업소유권에 관한 정보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실시하는 것
5. 공업 소유권에 관한 상담에 관한 것
6.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정보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것
7. 특허청의 직원 및 그 밖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
8. 전 각 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① 타인이 가지는 권리의 침해 회피, ②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 출원 등에 있어서의 중복 회피, ③ 기존 기술 정보에 근거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방침의 결정 등에 활용

-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의 운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공보 정보 등을 검색·조사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제공

- (특허정보 표준데이터의 민간 개방) 고도의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서비스 사업자를 위해서 '특허정보 표준데이터'도 제공도 실시

□ 등록정보처리기관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工業所有權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에 따라 등록정보처리기관에 전자파일에 대한 기록, 또는 이러한 기록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입력을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 편집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이하 "정보처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

4 유럽

□ 유럽특허협약(EPC) 및 각국 특허법에 산업재산 정보 활용 조항 명시

○ (유럽특허협약) 산업재산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관리할 수 있는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설립 근거 규정

- EPO에서는 HTTP, URI, RDF 및 SPARQL과 같은 표준화된 웹 기술을 사용하여 조회, 검색 및 볼 수 있는 **링크된 오픈 유럽특허데이터, 유럽 특허 등록데이터** 등과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제특허기관의 **법적 사건 데이터(INPADOC)*** 등의 **벌크 데이터 세트**, 표준화된 XML 인터페이스를 통해 EPO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웹서비스** 등을 제공⁴⁾

* (INPADOC) EPO에서 생성, 유지하는 국제특허문서(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의 약자로 특허 패밀리 및 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주 업데이트 됨. INPADOC은 1972. 5. 2. WIPO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합의하여 설립하였고 1991년 유럽특허청에 통합됨⁵⁾

- EPO에서는 산업재산 정보의 검색이나, 이를 이용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허정보 센터(PATLIB)*에서 산업재산 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⁶⁾

※ (PATLIB) 이를 PATent LIBrary를 나타내는 "PATLIB centres"라고 하는데 모든 PATLIB centres가 실제 도서관은 아님. EPO 회원국에 300곳 이상의 지역 특허정보센터가 존재⁷⁾

○ (독일 특허법) 산업재산 정보 수집 및 활용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통해 산재권 정보의 수집·제공 등 활용 전담기관인 **특허정보센터**(Patentinformationszentren, PIZ)를 설립·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

- 독일에는 약 20개의 특허정보센터가 존재하며, 독일 특허청의 협력 파트너이자 **유럽 PATLIB 네트워크** 회원으로 특허·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⁸⁾

4) EPO Home> Searching for patents> Data, <https://www.epo.org/searching-for-patents/data.html> (2022.9.25. 최종접속).

5) INPADOC,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PADOC> (2022.9.25. 최종접속).

6) EPO Home> Searching for patents> Helpful resources> Patent information centres, <https://www.epo.org/searching-for-patents/helpful-resources/patlib.html> (2022.9.26. 최종접속).

7) EPO Home> PATLIB Overview> Directory, <https://epn.epo.org/patlib/directory> (2022.9.26. 최종접속).

8) 독일 특허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piznet.de/de/> (2022.9.26. 최종접속).

| 표 3-4 | 독일 특허법상 특허 정보 관련 규정

<p>독일 특허법 제29조(3) 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에서는 특허상표청의 서류를 공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적명령에 의해 특허상표청은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그 정보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 없이 제공
<p>독일 특허법 제29조(3) 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와 관련하여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특허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방식 및 범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권한을 법적명령에 의해 특허상표청에 위임할 수 있음
<p>독일 특허법 제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공개 및 특허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공표하며, 특허상표청은 열람이 금지되지 않는 한* 특허정보의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특허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독일 특허법 제31조(3b)에서는 법규 위반 또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1)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특허문서의 열람금지사유로 규정
<p>독일 특허법 제3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특허법 제34조에서는 특허출원은 특허상표청에 하여야 하나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가 연방법률관보에서 공시를 통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센터를 통해 출원할 수 있음

제2절 주요국의 관련 정책⁹⁾

1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 새로운 특허 공개 검색 서비스 도입 발표

- 2022년 2월 1일 USPTO은 모든 미국 특허 및 공개된 특허출원에 대해 보다 **편리하고, 원격적이며**, 강력하게 풀 텍스트 검색을 제공하는 새로운 특허 공개 검색 도구 *(Patent Public Search tool)의 도입을 발표

* 2022년 9월에 폐기될 예정인 기존 검색 도구들의 기능을 결합하여 USPTO 심사관이 선행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급 특허 엔드 투 엔드(advanced Patents End-to-End, PE2E) 검색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무료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¹⁰⁾**

- **과거 이용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본사, 지역 사무소 또는 특허 및 상표 자원 센터와 같은 미국 특허청 시설에서만 기존 심사관 전용 검색 도구인 PubEAST와 PubWEST에 액세스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검색 도구의 도입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이용자가 원격 검색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등록증 전자발급 전면 전환

- 2021년 12월 10일 USPTO는 발명가 및 기업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특허 및 상표 등록증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2년부터 **특허 및 상표 등록증을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기로 함**

- 특허의 경우, 전자적으로 특허 등록증을 발행하기 위한 실무규칙을 개정하려는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규칙 제안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행할 예정

- 현재 규칙(37 CFR 1.315)에 따라 USPTO는 ‘발급 시 기록된 통신 주소로’ 특허 등록증을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USPTO는 더 이상 우편으로 특허 등록증을 물리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특허 문서 보기 시스템(예: 특허 센터 및 특허

9) 해당 내용은 특허청의 2022년 정책연구 “미래 기술변화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발전방향 연구”의 일부 내용(p.15~17, p. 25~31)을 요약 정리한 것임

10) 기존의 검색 툴은 Public-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PubEAST), Public-Web-based Examiner’s Search Tool(PubWEST), Patent Full-Text and Image Database(PatFT), Patent Application Full-Text and Image Database(AppFT) 등 4가지임.

- 출원 이미지 검색(PAIR))을 통해 전자적으로 특허 등록증을 발행
- 또한 특허권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된 특허 등록증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게 돼, 특허등록번호 부여 후 1주일 이내에 USPTO 인장과 국장의 서명이 있는 전자 특허 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짐
- 상표의 경우 규칙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증의 디지털 사본만 제공하는 전환에 대해 대중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종이 등록증을 디지털 버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2021년 12월부터 실시
- 의견 수렴결과, 많은 소비자가 상표 등록 인증서의 디지털 발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전자 상표 등록 인증서 발급을 시작
 - 종이 등록증의 인쇄 및 우편 발송을 중단하여 현재 절차보다 1-2주 더 빠르게 상표 등록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됨¹¹⁾
 - 전자 상표 등록 인증서는 종이 인증서를 인쇄하고 기록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신해 디지털 인장 및 청장의 전자 서명을 통해 발행
 - 인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상표 현황 및 문서 검색(Trademark Status and Document Retrieval, TSDR)’ 시스템*에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을 등록해야 함
- * TSDR 시스템은 등록 인증서의 사본에 대해 무료로 열람, 다운로드 및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전자 상표 등록 인증서와 병행해 상표권자는 USPTO에 인증서 인쇄본을 15달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쇄본은 상표 등록 사항과 권한 있는 인증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법적 증빙 및 해외 출원을 위한 서류제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¹²⁾

11) 자료출처: www.uspto.gov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4&po_no=20905 (2022.4.14. 최종접속).

12) 자료출처: www.uspto.gov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5&po_no=21207 (2022.6.12. 최종접속).

2 미국-영국간 데이터 파트너십

□ 미국 상무부(DOC)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와 함께 양국 정부의 데이터 파트너십 심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 ('21.12.8)

○ DOC와 DCMS는 국경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용 및 교환을 촉진하여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고,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

미국과 영국의 데이터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 영국과 미국은 21세기를 위한 도구를 설계하고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양국은 **상호 데이터 흐름의 이점을 지원하고 안정화**시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환영하며,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조사의 목적으로 정부가 정보에 접근하는 중요한 방식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도전과 기회에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함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직면한 문제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솔루션이 필요한 가운데 양국은 국제적 데이터 흐름을 차단할 위험성이 있는 부정적인 추세를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및 신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함
- 그 밖에 산업계, 시민 사회,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단체와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참여**를 약속함
- 덧붙여, 양국의 풍부하고 공유된 역사와 전통, 높은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대한 약속은 디지털 기술의 출현 이전부터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왔고 양국의 협력 관계는 미래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보할 것이며 양국은 2022년에도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하기를 기대함

출처: DataGuidance, International: UK and US issue joint statement on deepening their data partnership¹³⁾

13) <https://www.dataguidance.com/news/international-uk-and-us-issue-joint-statement-deepening> (2022.4.14. 최종접속).

3 EPO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

□ 2021년 6월 30일 EPO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유럽 및 국제 수준의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승인¹⁴⁾

○ 2022년 1월 1일 EPO는 EPO 내부의 신규 데이터 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ule, DPR)이 발효되었다고 밝히며,¹⁵⁾ 신규 DPR을 제정하여 EPO 서비스 규정에 데이터 보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

○ EPO의 DPR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⁶⁾

‘EPO 데이터 보호규칙’ 주요내용

- 신규 DPR은 EPO가 생성 및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적용됨
- EPO가 국제적인 모범 사례 원칙과 핵심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신규 DPR을 제정 및 발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EPO의 모든 데이터 처리 활동에 있어 직원, 사용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동일한 데이터 보호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
- DPR과 관련한 정보, 법률 텍스트, 운영 문서는 **EPO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정책(Data protection and privacy polic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¹⁷⁾
- DPR이 발효됨에 따라 새롭게 발족된 **데이터 보호 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는 향후 **EPO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감독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EPO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된 데이터 처리 작업에 적용되며, 2022년 7월 1일까지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운영됨

4 EU의 데이터 관련 법률

□ 2022년 1월 20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의 초안을 승인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DSA’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제안¹⁸⁾

14) 자료출처: www.epo.or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562 (2022.4.24. 최종접속).

15) EPO Data Protection Rule, https://www.epo.org/modules/epoweb/acdocument/epoweb2/513/en/CA-D_5-21_en.pdf (2022.4.24. 최종접속).

16) 자료출처: www.epo.or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3&po_no=20946 (2022.4.24. 최종접속).

17) <https://www.epo.org/about-us/office/data-protection-and-privacy.html> (2022.4.24. 최종접속).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99 (2022.4.24. 최종접속).

- 2022년 1월 20일 유럽 의회는 EC가 제안한 DSA 초안을 찬성 530표, 반대 78표, 기권 80표로 승인하며 일정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4월 2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협상단은 DSA에 합의¹⁹⁾

‘EU 디지털 서비스법’ 주요내용

(1) 보다 책임감 있는 온라인 플랫폼

- **(알고리즘 책임)** EC 및 회원국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음
- **(온라인 불법 콘텐츠·서비스·상품의 신속한 제거)** 사용자가 온라인 불법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을 신고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통지 및 조치(notice and action)’ 절차를 신속히 수행함
- **(온라인에서의 기본권 보호)**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호 등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비임의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통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강화)** 고객사 정보수집 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거래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강화하고 무작위 검사 등을 통해 불법 콘텐츠가 자사의 플랫폼에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사이버 폭력 규제)** 특히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즉각적인 게시 중단(takedown)을 통해 불법 콘텐츠(리벤지 포르노 등)의 무단 공유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패널티)**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사용자가 45만 명 이상) EC가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됨
- **(중소기업의 부담 감소)** 중소기업의 적응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된 의무의 잠재적인 경제 효과를 면밀히 추적함

(2)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공간

- **(투명성 의무)** 플랫폼에 부과되는 새로운 투명성 의무를 통해 사용자는 콘텐츠가 자신에게 추천되는 방식(추천 시스템)*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고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는 옵션을 최소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음
 - * 추천 시스템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행한 검색 결과 또는 표시되는 정보의 상대적 순서 또는 중요도를 결정한 결과를 포함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 광고 제어)** 사용자는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을 더욱 잘 제어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성적 취향, 종교, 민족 등)에 관한 타겟 광고는 금지됨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은 타겟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 **(다크 패턴* 금지)** 온라인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는 예를 들어 특정 선택을 더 부각시키거나 방해 팝업을 통해 수신자에게 선택을 변경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넛지(Nudge)**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큼 쉬워야 함
 - * 다크 패턴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와 같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함(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 넛지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으로 강요가 아닌 간접적 개입으로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가리킴(출처: 한국소비자원)
- **(보상)** 디지털 서비스 수신자는 플랫폼의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19)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9&po_no=21167 (2022.6.12. 최종접속).

- 2021년 12월 15일 유럽 의회는 찬성 642표, 반대 8표, 기권 46표로 DMA 초안을 승인하였고, 2022년 3월 24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규칙인 ‘디지털 시장법(DMA)’에 최종 합의 하였으며, 2022년 5월 17일 유럽 의회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승인
- 2022년 4월 23일에는 DSA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DMA 및 DSA 모두 오는 7월경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후에는 이사회에 의해 공식 채택되고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공포 후 20일 이내에 발효되고 6개월 후부터 적용 예정²⁰⁾
- DMA의 기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²¹⁾

‘EU 디지털 시장법’ 주요내용

- 최대 메세징 서비스(Whatsapp, Facebook Messenger, iMessage 등)는 소규모 메세징 플랫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개방하여 상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상호 운용 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타겟 광고를 위해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게이트키퍼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 사용자가 브라우저, 가상 비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게이트키퍼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C는 연간 글로벌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조직적 침해행위의 경우 일정기간 타사의 인수를 금지할 수 있음
- 또한, 동 법률은 기술적인 수준이 완성되고 관련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유럽 의회 및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20일 후에 발효되고 6개월 후부터 적용됨

-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DGA)’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하였고,²²⁾ 2021년 11월 30일 유럽 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및 이사회 의장(Council Presidency)은 협상을 거쳐 동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합의²³⁾

20)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4&po_no=21217 (2022.6.12. 최종접속).

21)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04 (2022.4.24. 최종접속).

2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767> (2022.4.24. 최종접속).

2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1129IPR18316/data-governance-deal-on-new-rules-to-boost-data-sharing-across-the-eu> (2022.4.24. 최종접속).

- 2022년 4월 6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2021년 11월 30일 합의한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찬성 501표, 반대 12표, 기권 40표로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⁴⁾

‘EU 데이터 거버넌스법’ 주요내용

- DGA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시장의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건강, 환경, 에너지, 농업, 모빌리티(mobility), 금융, 제조, 공공 행정, 기술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럽 데이터 공간을 구축
- MEPs는 EU 각료들과의 협상에서 非EU 국가들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허점이 없도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정한 접근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운 DGA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정함
- 또한, MEPs는 과학 연구, 의료, 기후 변화 방지, 모빌리티 개선 등과 같은 일반적인 관심 목표를 위해 데이터를 최대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보다 가시화 될 것이며 DGA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통의 유럽 로고를 사용할 예정임
- 공공부문은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생성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독점 계약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은 12개월, 기존 계약은 2년 6개월의 기간 내로 제한해야 함
- 동 법은 향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후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발효될 예정임

5 영국지식재산청의 ‘ONE IPO’ 서비스

- 영국지식재산청(UKIPO)는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작가와 혁신가, 기업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와 지식재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ONE IPO 서비스’를 2021년 4월 론칭²⁵⁾

| 표 3-5 | 영국 ‘ONE IPO’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중심의 탁월한 서비스 제공 • 직원들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의 도구 제공 •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촉진 • 영국 혁신의 활성화 및 가속화 • 글로벌 리더십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2021-2024) 특허, 상표, 디자인 통합 시스템인 Common IP System(CIPS)을 구축, 특허는 이 시스템에 추가되어 2024년 봄까지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 • (2단계: 2023-2026) UKIPO의 모든 권리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2025년 One IPO 시스템에 상표 추가, 2026년 디자인 추가

24) 자료출처: www.europarl.europa.eu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38 (2022.4.24. 최종접속).

25) 자료출처: www.gov.uk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8%81%EA%B5%AD&po_item_gb=EU&po_no=20399 (2022.5.3. 최종접속).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2026 이후) UKIPO의 고객 및 직원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며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청으로 진화
핵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보호) 단일화된 IPO 계정을 통해 관리자가 이익제기, 무효심판 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IP 권리를 보호하거나 권리에 기초한 금융, 라이선스, 갱신 등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IP 연구) 고객은 UKIPO가 보유한 풍부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공유하며 UKIPO의 산업별·시장별·주제별 보고서에 접근 가능 • (IP 활용) 장기적으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지원을 UKIPO의 핵심 서비스로 부각시킬 예정

6 중국 전략성의 신흥산업과 특허분류 연계

□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개요

- 중국의 국가 상황, 과학기술 및 산업 수준, 산업별 발전단계와 특성에 근거하여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지정**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 동차, 디지털 창의산업 등 9개 산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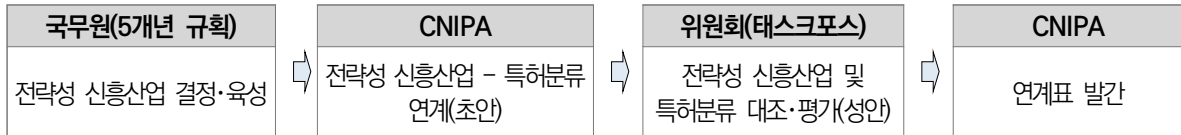
** '10년 중국 국무원이 최초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관련 산업 지원

□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과 특허분류 연계

- CNIPA는 전략성 신흥산업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전략성 신흥 산업과 특허분류 연계표’**를 작성·발표

- (절차) 국무원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해 **CNIPA가 연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 (TF*) 평가(결정) 과정을 거쳐 발간·배포**

* 국가지식재산국(CNIPA), 국가통계국, 중국과학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전략성 신흥산업 및 국제특허분류 대조작업 평가회 개최



- (구성) 9개 신흥산업 분야의 40개 세부 산업에 대하여 관련 IPC 부여

| 표 3-6 |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IPC 연계표(예시)

산업분야 (9개)	세부산업명 (40개)	관련 IPC	비고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산업	G06F11, H04L1, B41J(B41J2 제외), G06F, H04N, G01S1(G01S1/02 제외), G06F1(G06F1/16 제외), H04B1, G01S1/02, G01S5/02, G01S5(G01S5/02 제외), G06F3, G06F15/16, H04L5, H04L7 등	컴퓨터 및 보조 장비, 라우터,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통신 시스템 장비 제조업, 컴퓨터 제조, 클라우드 플랫폼, 사물 인터넷, 인터넷 액세스, 네트워크 플랫폼 등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서비스	G05F, G06F17/10, G06F17/11, G06F17/12 등	인터넷 지능형 제조 서비스 플랫폼 등
		G06F3/06, G06F9/50, G06F16/182 등	빅데이터 자원 서비스 등
		G06F8/60, G06F8/61, G06F8/65, G06F8/654, G06F8/656, G06F8/658, G06F8/70 등	인터넷 검색 서비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웹 사이트 탐색 서비스 등
	G06K7/10, G06K17(G06K17/00 제외) 등	인터넷 플랫폼	

- (활용) 산업별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에 대한 통계적 근거로 활용

- (성과) 연계표를 통한 분석결과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의 특허 양도·허가·담보 등 특허활용건수는 14.4만건(11~15)에서 30.5만건(16~20)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 (아주경제, 21.3.15, '중국, 특허담보 용자액 82조원 훌쩍')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제4장

결론

결론

-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 정보는 기업 등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결과의 핵심결정체로 구체적인 기술내용 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기술·시장전략, 발명자 등 핵심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정보를 담고 있음
- 또한, 산업·기업별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개발(R&D)을 가능케 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경영자원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산업·기술 변화의 흐름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 이에,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강구·시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나,
 - *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측면의 고유 특성(국제표준화된 해외데이터 활용빈도多, 분석 등 가공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R&D·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등)은 ‘공공데이터법(기본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
 - 현재 관련 규정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
 - * (특허법) 전자정보 수집에 관한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근거
(발명진흥법) ‘산재권 정보 제공 및 활용촉진’ 이라는 하나의 절(節)로 편재(7개 조항)
 - ** 해외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산업 등 타분야와 연계한 특허정보 분석에 필요한 분류체계 정보 연계 등 주요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부재
 - 주요국에서도 특허법 등에서 산업재산 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 등으로 운용

해외 법제 사례

- ▶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법’ 등에서 산재권 정보의 수집·활용 업무 사항 및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에 대한 근거를 명시
- ▶ (중국) ‘지식재산 정보 공공서비스 지침 발행에 대한 통지(通知)’에서 모든 국가기관의 IP정보 활용교육, 컨설팅, R&D 단계별 활용 및 산업별 DB 구축 등 IP정보서비스 제공원칙 규정

□ 본 연구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시행 전 하위법령안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시행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활용 촉진법 시행령(18개 조문), 시행규칙(5개 조문),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9개 조문 삭제)을 마련함

○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별 제정이유와 국내외 유사 입법례를 조사분석

〈 표 4-1 | 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분류정보간 연계표	<p>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계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p>제9조(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 특허청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p>③ 특허청장은 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p>제10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p>

구분	주요 내용
	<p>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방위산업기술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5.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 <p>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출원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의 소관 국가행정기관 2. 국가정보원 3. 검찰청 4. 경찰청 <p>④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표 4-2 | 시행규칙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자화 대상 서류	추가적으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류를 열거
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전자화 내용과 서면제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출원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정정신청서 양식
전자화업무 위탁 절차	전자화업무 위탁 신청서 제출 → 업무규정 승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양식

| 표 4-3 |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	촉진법 시행령 제2조로 이관 [삭제]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촉진법 시행령 제9조로 이관 [삭제]
정보화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로 이관 [삭제] * 새로 시행되는 발진법(‘22.8.4 시행)은 “정보화 전문기관”이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변경됨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촉진법 시행령 제8조로 이관 [삭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촉진법 시행령 제11조로 이관 [삭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로 이관 [삭제]

붙임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확산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가공·저장·관리·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산업재산진단”이란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관한 평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방향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6.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특허청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검색·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출원·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3.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이전·거래 및 사업화 등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라.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

6.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자,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포함한다)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산업기술·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의 정부·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연구 지원

3.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인력의 교류 지원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 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2.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4. 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새로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경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지원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지원
 7.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지원
 -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

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전자화기관
2.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3. 정보원
4. 전략원
5. 제26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28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2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별 칙

제30조(별칙)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정보원은 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를 삭제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2호 중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6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조문 비교표 (시행령 기준)		이관 조문
	<p>범불인(수정안 기준)</p>	<p>시행령안</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④ (생략) ④ 특허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키(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p>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p>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의 추진방향</p>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영안	이관 조문
<p>제7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관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개발·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특허청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세부사업의 실시계획 3. 세부사업의 비용 및 그 조달계획 4. 그 밖에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p>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정보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p>	<p>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특허청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계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③ 제4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4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관 조문</p>
<p>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특허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p> <p>③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특허청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특허청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사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규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p>	<p>제6조(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 <p>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p> <p>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 그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의 내용보정에 한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p><전자화 대상 서류></p>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전자화대상 서류)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8. 삭제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11. 삭제 12. 발급신청서(서류등본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증명신청서(특허추소신청사실, 심판청구사실, 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 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및 결정문등본송달의 증명으로 한정한다) <p>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4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도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시 전자화할 수 있다</p> <p>다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제7호사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발급신청서(서류의 등본·초본 발급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17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및 상표원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사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3.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판청구 사실증명 나. 심결확정 사실증명 다.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라.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p>〈전자화 내용 통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사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9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p>

법률안(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전자화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p> <p>①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 3. 그 밖에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① 법 제12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것 2. 인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p> <p>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p>② 특허청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직업계획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③ 특허청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6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것

법률안(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2. 인력</p> <p>가. 5년 이상 전신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p> <p>나.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p> <p>②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직업 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③ 특허청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자에게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상표법 시행규칙 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갖출 것</p> <p>2. 인력 요건</p> <p>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p> <p>나. 다음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을 것</p> <p>1)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p> <p>2)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p> <p>②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작업 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서</p> <p>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서</p> <p>4.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둘 이상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특허청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p>	<p>제8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이하 "산업재산 통계·지표"라 한다)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2. 산업재산 무역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p> <p>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p> <p>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특허청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는 현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의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p>
<p>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p> <p>2. 출원·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경우</p> <p>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이 인정하는 경우 <p>② 특허청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이 인정하는 경우 <p>③ 특허청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제8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 ① 삭제</p> <p>② 특허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제한기준을 정하여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특허청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이 인정하는 사항 <p>④ 특허청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③ 특허청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p>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④ 특허청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방위산업기술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5.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 <p>② 특허청은 제1항 각 호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출원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의 소관 국가행정기관 2. 국가정보원 3. 검찰청 		

법률(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제16조(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② (생략)</p>	<p>4. 경찰청 ④ 특허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이관 조문</p>
<p>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보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제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특허청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④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경찰청 ④ 특허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없음</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지정등록증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지정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③특허청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생명,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p>제11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은 지정된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산업재산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④ 특허청은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은 지정된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분석 4.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산업재산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④ 특허청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지정등록증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지정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p>③특허청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은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4.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진단 5.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1조(국제협력)</p> <p>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팀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특허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없음</p>	<p>7. 그 밖에 특허청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력, 시설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 특허청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팀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p> <p>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산업재산 정보값 오류 5. 그 밖에 특허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생성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p> <p>④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 ①~② (생략)</p>	<p>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없음</p>	<p>이관 조문</p>
<p>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④ (생략)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⑨ (생략)</p>	<p>제1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2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2.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3.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보급 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④ (생략)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⑨ (생략)</p>	<p>제1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산업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산업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p> <p>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28조의8(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 4.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p> <p>② 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p>	<p>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하는 법인, 기관</p>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② (생략) ③ 특허청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p>

법률인(수정안 기준)	시행영안	이관 조문
<p>진단기관, 정보원, 전락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 법 제11조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법 제17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재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법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p>②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p>③ 특허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p>④ 특허청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p>
<p>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8조(청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p> <p>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p>없음</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p>

법률안(수정안 기준)	시행령안	이관 조문
<p>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없음</p>	<p>제18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0월 0일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23년 0월 0일 	<p>발명진흥법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생략)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생략)
<p>부 칙</p>	<p>제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산업재산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업무 정지 6개월 경고	지정 취소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권단기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	250	500
나.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	250	500
다.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	250	500

붙임 3	조문 비교표 (시행규칙 기준)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이관 조문
<p>제6조(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특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 <p>②~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결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투매제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소신청 사실증명 나. 심판청구 사실증명 다. 특허취소결정확정 사실증명 라. 심결확정 사실증명 마.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바.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p>제3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내용 결정신청서) 영 제6조제4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자화내용 결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결정신청서를 말한다.</p>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법의 지정 등)</p> <p>②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p>
<p>제7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①~② (생략)</p> <p>③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위탁 절차) ① 법</p> <p>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p>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특허문서 전자화기법의 지정 등)</p> <p>②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p>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이관 조문
	<p>없거나 신청인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직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직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6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직업 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p>상표법 시행규칙 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 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한다)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이관 조문
	<p>②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서 4.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은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은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7조(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이관 조문
<p>제11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특허청은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지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지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p>	<p>보존에 관한 사항</p> <p>3.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에 필요한 사항</p> <p>상표법 시행규칙 제99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처리절차 2.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 3.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의 비밀 유지 4.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지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지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p> <p>특허청 고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산권진단기관지정서(별지 제3호서식)</p>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이관 조문
	<p>부 칙</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p> <p>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p>	

※ 별지 1~3호 서식 생략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발행일 2022년 9월

대표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연구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특허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1544-8080 Fax: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02)2189-2600 Fax: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6884-048-5 13500
DOI : 10.8080/P9791168840485